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민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027 발의연월일: 2020. 11. 6.

발 의 자:김민기·조승래·안민석

강선우・정춘숙・송기헌

김주영 · 이재정 · 이원욱

허 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농촌지역이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농지면적의 감소와 더불어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채 인근주민의 휴식 공간 등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음.

현행법상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된 경우 등에는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폐지할 수 있으나, 관리자가 폐지를 원하지 않으면 폐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실정임.

이에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거나 방치되고 있는 농업생산기 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행 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24조). 법률 제 호

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"을 "제1항 및 제2항"으로 한다.

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이를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4조(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)	제24조(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시・도지사 또는 시장・군
	<u>수·구청장은 농업생산기반시</u>
	설관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
	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농
	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신청을
	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
	경우 이를 직권으로 폐지할 수
	있다.
② 제1항에 따라 폐지하는 농	③ 제1항 및 제2항
업생산기반시설의 매각 대금은	
제14조제3항의 예에 따라 사용	
하여야 한다.	